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2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이종배・김소희・권영진

이성권 • 이종욱 • 김성원

박덕흠 • 성일종 • 김미애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용 또는 타용 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 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 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②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	
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	
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	
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1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	
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u>경우</u>	<u>경우.</u>
<단서 신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
	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
	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
	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
	<u>다.</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